

「2019년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근로자 채용」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

「2019년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근로자 채용」의 최종 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29일
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

1. 최종 합격자

채용직종	채용분야	선발예정인원	합격자 현황		
			접수번호	성명	연락처 뒷자리
공무원 (시설관리원)	건축분야	1명	2019-건축-1	이○성	8997
	기계분야	1명	2019-기계-1	엄○중	8121
	전기분야	1명	2019-전기-1	박○수	3247
공무원 (청사미화원)	환경미화	2명	2019-청소-1	안○숙	0141
			2019-청소-2	이○라	9944

※ 합격자 순서는 접수번호 순으로 나열함

2. 합격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
나. 등록기간 : 2019. 4. 1.(월) ~ 4. 5.(금)

다. 등록방법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

라. 제출서류

- 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부 <서식 1>
-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 <서식 2>
 -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(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)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함.
 -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3~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은 후 제출(검사결과 합격여부 표기가 있어야 함)
- ③ 사진 1매(jpg파일) : 반명함판 3×4, 상반신 탈모

3. 유의사항

가.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「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채용후보자 등록 및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며,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신원조회·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
☎ 문의 :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041-560-0013

<서식 1>

공무직 인사기록카드

성 명		(한 자)	생년월일		[사 진]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
주 소					
실거주지					
연락처	휴 대 폰 : E-mail :				
특 기		취 미		자격증	
병 역	본 인	군 별/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학 력	학 교 명	기 간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시험 자격	자격증종류		합격일		시행기관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·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근무경력	근무기간	직 위	단계급	채용구분	발령기관

<서식 2>

(앞쪽)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 진
(3cm × 4cm)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 (한 자)	()	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
	우: ()		
안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 X선 검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 합 격 [] 불 합 격 [] 판 정 보 류	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'매독(syphilis)'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'혈소판 감소 자색반'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- ※ 판정 오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